2016. 6. 7. 개정

K-Cash 회원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K-Cash를 이용함에 있어 금융결제원의 '전자화폐공동업무규약'에 의한 K-Cash 및 K-Cash 접근매체의 발행기관인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K-Cash를 발급받은 회원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K-Cash'란 회원이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Chip)이 내장된 전자식 카드에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였다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② '회원'이란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K-Cash접근매체를 발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③ '가맹점'이란 K-Cash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K-Cash 가맹점 약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가맹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가입을 승인 받은 업소, 시설 등을 말하며, 온라인 가맹점을 포함합니다.

④ 'K-Cash거래'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해 K-Cash 및 이와 관련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K-Cash를 통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전자금융 거래를 말합니다.

⑤ '전자적 장치'란 K-Cash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하며, 컴퓨터 등에서 K-Cash 가치저장 및 환불을 하거나 잔액을 조회하고 온라인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K-Cash를 판독하는 기기(이하 'K-Cash판독기'라 합니다)를 포함합니다.

⑥ 'K-Cash접근매체'란 K-Cash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를 말합니다.

⑦ '전자문서'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⑧ '거래지시'란 회원이 이 약관에 따라 은행 및 가맹점의 거래은행에 K-Cash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⑨ '오류'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K-Cash거래가 이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⑩ '가치저장'이란 회원이 K-Cash 판독기 기타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K-Cash접근매체에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⑪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발급 등)

① 은행은 회원 본인임을 확인한 후 K-Cash접근매체를 발급하며, 회원은 K-Cash접근매체의 발급 신청시 K-Cash 거래를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K-Cash접근매체의 발급을 신청(컴퓨터를 이용한 신청 포함)하고자 하는 분은 이 약관에 동의한 후 은행이 제시하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회원이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K-Cash거래를 하거나 온라인가맹점에서 K-Cash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K-Cash판독기를 회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K-Cash, K-Cash접근매체 및 K-Cash판독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 이 약관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분해 등을 해서는 안되며 전자적 정보의 복제· 변조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⑤ 회원으로서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시점은 K-Cash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때로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39호(2016.4.18)

제4조(비밀번호)
회원은 K-Cash접근매체의 발급신청시 비밀번호(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중 언제라도 등록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
① 회원이 K-Cash로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는 K-Cash가맹점 어디에서나 K-Cash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원이 K-Cash로 지급한 경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입니다.

제6조(이용의 제한)
회원은 K-Cash 사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K-Cash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스템의 휴업일 또는 휴업시간
2.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의 위·변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산장애, 통신회선 장애 및 정전 등으로 시스템과의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시스템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 시스템에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가치저장)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동화기기 (CD/ATM), 컴퓨터, 구매단말기, 현금충전단말기 등 은행이 정한 기기 (이하 '가치저장단말기'라 합니다) 를 이용하여 K-Cash접근매체에 가치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가치저장단말기를 이용하여 K-Cash접근매체에 가치 저장할 수 있는 최대금액한도는 50만원으로 합니다.
③ 은행은 K-Cash접근매체에 가치 저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예금계좌를 통하여 K-Cash접근매체에 가치 저장할 경우 제4조에 의한 비밀번호와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8조(가치환불)
① 은행은 회원이 K-Cash접근매체에 기록된 잔액의 교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K-Cash접근매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회원이 요구한 교환금액 전부를 즉시 회원의 예금계좌로 지급합니다.
②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은 은행에 K-Cash접근매체를 반납하고, 은행은 15일 이내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그 잔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가치저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가치저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오류입력횟수 초과
2. K-Cash의 최대 가치저장한도 초과
3.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가 사고 신고된 경우
4. 예금계좌 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5. 예금계좌의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경우
6. 기타 가치저장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원은 K-Cash거래에 이용한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K-Cash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회원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해주는 것이 사실상 곤란할 경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회원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39호(2016.4.18)

③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④ 회원이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은행의 본점 또는 영업점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한 본점 또는 영업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⑤ 은행은 제3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 제외)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회원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며, 이 경우 제3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원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는 제11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중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과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거래승인에 의한 기록은 회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K-Cash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K-Cash거래에 관한 기록
2. K-Cash거래의 종류, 일시, 금액, 가맹점명 및 예금계좌를 나타내는 정보
3. 회원이 K-Cash거래에 따라 부담한 수수료
4. K-Cash거래의 신청 및 조건변경에 관한 사항
5. K-Cash거래 요청시 회원이 이용한 전자적 장치의 종류,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K-Cash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2조(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② 은행은 스스로 거래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13조(거래지시의 철회 등)
① 회원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전자적 장치의 조작오류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고 구매 이후 당해 지급용단말기에서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K-Cash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K-Cash로 온라인 가맹점에서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분실, 도난)
① 회원은 K-Cash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은행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고된 K-Cash접근매체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가치저장을 제한합니다.
② K-Cash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K-Cash접근매체에 이미 가치저장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은행은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회원은 K-Cash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6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K-Cash 또는 K-Cash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K-Cash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K-Cash접근매체를 이용하여 K-Cash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K-Cash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7조(가맹점과의 분쟁)

① 회원이 가맹점에서 K-Cash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거래 하자에 관한 분쟁은 회원과 가맹점이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은행은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분쟁으로 발생되는 거래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회원과 가맹점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은행은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이의제기)

① 회원은 K-Cash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회원이 쉽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제19조(변경사항의 신고)

회원은 예금계좌 등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0조(자격정지·상실 및 탈회)

①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회원이 K-Cash를 이용하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은행이 회원자격을 정지시킨 후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은행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발생시 회원에 통지하며,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K-Cash접근매체 및 K-Cash판독기 반환
2. K-Cash 잔액 및 예치금 청구

제21조(약관변경 승인 등)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K-Cash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은행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약관 변경의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과 아울러 2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39호(2016.4.18)

② 은행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 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 및 은행 영업점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하며, 2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③ 회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약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K-Cash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회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은행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하여야 합니다.

제23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4조(비밀보장)
은행은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Cash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회원의 인적 사항 및 계좌, K-Cash접근매체 및 K-Cash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39호(2016.4.18)